

## 오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

전문개정 1999년 1월 15일 조례 제 520호  
개정 2008년 1월 15일 조례 제 949호  
(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문개정에 따른  
오산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 등의  
정비에 관한 조례)  
일부개정 2015년 6월 1일 조례 제1399호  
(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)  
일부개정 2022년 1월 13일 조례 제1972호  
(제명개정)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산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(이하 “정원”이라 한다)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8. 1. 15, 2022. 1. 13>

**제2조(사무과의 설치)**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.

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·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.

**제3조(사무과장)**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.

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**제4조(전문위원)**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.

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.

③ 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 사무과장의 지휘·감독을 받는다.

**제5조(정책지원관)**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의회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.

② 정책지원관의 임용·복무 등은 「지방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등

오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

관계법령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[본조신설 2022. 1. 13]

**제6조(직원의 정원)** 의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「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」로 정한다. <개정 2015. 6. 1>

[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2. 1. 13]

**제7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장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22. 1. 13>

[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. 1. 13]

**부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<2008. 1. 15 조례 제949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<2015. 6. 1 조례 제1399호,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>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** 생략

**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** ① 부터 ⑬ 까지 생략

⑭ 오산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중 “오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”를 “「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」”로 한다.

**부칙** <2022. 1. 13 조례 제1971호,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 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>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